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55850 판결 [임대보증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55850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3. 12 선고 2019가단281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호성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, 김주현

변론종결 2021. 8. 27.

판결선고 2021. 9. 10.

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3. 12. 선고 2019가단281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 원고에게 11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12. 15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.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강희석, 판사 오연정, 판사 허준서